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231회 임시회〉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이 태 우, 김 정 화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기금의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각 기금별 설치근거 조례

3. 기금의 개요

(1) 기금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어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함.

(2) 운용방침

- 기금의 사업효과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
-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자금 활용 극대화로 지역안정화 기능 강화
- 사회단체 중복지원 등 선심성 용도 집행의 통제

(3) 기금의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고
보훈회관 건립기금	2009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기금 조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주민지원과	

(4)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보조금	예치금	이자	계	비용자성 사 업 비	예치금
보훈회관 건립기금	2,658,734	500,000	2,102,266	56,468	2,658,734	2,635,000	23,734

(5)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13년도말 조성액①	'14년도 기금운용계획		'14년도말 조성액 ④=①+②-③	증 감 ⑤=④-①
		수입②	지출③		
보훈회관 건립기금	2,102,266	556,468	2,635,000	23,734	△2,078,532

(6)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1) 보훈회관 건립기금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
- 2014년 주요사업
: 보조금, 적립금 및 이자 등으로 보훈회관 건립 시설비로 사용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2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말 현재액①	2014년도말 현재액②	증 감 (②-①)	
예치금	대구은행	1,554,030	2,102,266	23,734	△2,078,532	

(7) 종합검토의견

- 기금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각 기금별 설치근거 조례에 의하여 설치 · 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 이번에 제출된 보훈회관 건립기금 변경(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설치목적에 맞게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제2항 단서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10분의 5이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기금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임.

○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 수입계획으로는
 - 국비보조금 5억원이 교부되어 신규로 계상하고
 -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기정 26,000천원에서 30,468천원이 증가된 56,468천원으로 변경하여
 - 총 수입계획은 기정 2,128,266천원에서 530,468천원이 증가된 2,658,734천원입니다.
- 지출계획으로는
 - 보훈회관건립에 따른 기타보상금의 설계경기 공모 입상작 시상금 10,000천원은 설계를 공모에서 입찰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전액삭감하고
 -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는 기정 1,451,000천원을 설계비 10,000천원을 포함하여 1,145,000천원이 증가된 2,596,000천원으로 변경하고
 - 예치금은 기정 628,266천원에서 604,532천원을 감액한 23,734천원으로 변경하여
 - 총 지출계획에서는 기정 2,128,266천원에서 530,468천원이 증가된 2,658,734천원입니다.

※ 지출계획에서 시설비, 예치금 등의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5이상 변경이 되어 사전 의회의결 사항에 해당됨.

-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당초에 없던 국비보조금 5억원이 신규로 교부되고, 금년도내에 공사발주를 하기 위하여 예치금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인 만큼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 등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4년 10월 10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농업정책과)

3. 개정이유

- 범위의 제한이 없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조항을 완화 및 폐지하여 행정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방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제3조(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 관련 조항 개정

새주소로 정정 및 “태양광발전소 관련시설 제외” 추가

나. “제6조(위탁)제4항” 신설

- 위탁의 취소(협약해지) 등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 “제7조(위탁신청)제1항제7호” 삭제

- 그 밖에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제23조(위탁의 취소 등) 삭제

- 신설되는 “제6조(위탁)제4항” 준용

5. 관계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04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 제3조(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5 등 3필지로 표기되어 있는 달성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위치를 2014. 1. 1.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로 변환하고 옥상 등 일원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관련시설은 제외” 코자 함이며 제6조에 위탁의 취소(협약해지) 등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개정 2014. 07. 10 조례 제2284호)』를 준용토록 제4항을 신설하는 한편, 제7조(위탁신청) 제1항제7호 및 제23조(위탁의 취소 등) 범위가 불분명한 행정 편의적 임의조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준용이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여 정부 3.0시대에 걸맞게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한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종합유통센터의 명칭등) 종합유통센터의 명칭·위치는 다음과 같다.

명칭	위치	비고
달성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9	물류창고 포함 태양광발전소 관련시설 제외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탁의 취소(협약해지) 등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이 조례 시행 후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는 경우는 제외)의 위탁의 취소(협약해지)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직전 조례 제23조에 의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종합유통센터의 명칭등) 종합유통센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제3조(종합유통센터의 명칭등) 종합유통센터의 명칭.위치는 다음과 같다.		
명칭	위치	면적(m ²)		비고	명칭	위치	비고
		대지	건물 연면적				
달성농 수산물 종합유 통센터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5, 556-15, 556-24번지	37,289	22,689.4	물류창고 포함	달성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9	물류창고 포함 태양광발전소 관련시설 제외
제6조(위탁) ① ~ ③ (생략) ④ <신 설>					제6조(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의 취소(협약해지) 등 수탁기관 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 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 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탁신청)① 종합유통센터의 관 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1호 서식의 관리·운영위탁신청 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운 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신청)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삭 제>		
제23조(위탁의 취소 등) ①군수는 운 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 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 반한 경우 2.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붙임 3)

관계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4년 10월 10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청소위생과)

3. 개정이유

○ 2014년 1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으로 음식물폐기물 관련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그 기준을 일치시키고 함.

4.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관련법령 조항 항목 변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감량의무이행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 및
제6항

나.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기준 변경

- 영업신고와 동시에 신고 ⇒ 1개월 이내에 신고
- 공동배출 사업장 신고기준 추가

다.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조항 항목 추가

- 음식물 제조·가공·처리로 음식물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루100ℓ 이상)하는 사업장

라. 신고서 양식 변경 -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

마. 신고서 양식 추가 - 별지 제1-1호, 제4호, 제5호 서식

5.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 2, 제38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60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 법령규제개선에 따라 2014년 1월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일부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그 기준을 일치시켜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인·허가에 따른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기업 등의 창업활동 활성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시행규칙 제16조”를 “시행령 제8조의4”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음식물 제조·가공·처리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루100ℓ 이상)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한다.

제8조제5항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음식물 제조·가공·처리로 음식물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루 100ℓ 이상)하는 사업장 : 건조, 탈수 등을 통해 부피감소 등

제8조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달성군 내에 사업장을 둔 2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들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두어야 하며, 그 기구의 대표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되, 그 위탁계약서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 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수탁업소(시설)나 위탁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14.1.1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음식점: 객석·객실 합계 면적 m ²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m ²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kg/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kg/일)	부산물 발생량 (kg/일)	처리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kg/일)	위탁계약 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변경신고

를 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깎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깎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잔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깎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유통센터)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별지 제1-1호 서식] (앞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⑥ 공동 수집· 운반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kg/일	kg/월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재활용방법	위탁량(kg/일)	소재지		
⑦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kg/월	kg/년					
	공동재활용	재활용량(kg/일)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공동처리 내용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재지	시설규격 (능력)(kg/일)	처리예상량 (kg/일)	부산물 예상발생량 (kg/일)	부산물 처리방법		
⑧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⑨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뒷면)

작성방법
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공동 운영 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2. ⑥란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위탁처리업소 현황(공동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현황과 위탁량 등) 등을 적습니다. 3. ⑦란은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공동처리 내용(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⑧ 및 ⑨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 <신설 2014.1.17>

(앞쪽)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달성군수

발신: (업소명)

(대표자)

인

①업소명		②소재지	분류번호				
③대표자		④전화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음식점: 객석·객실 합계 면적				m ²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m ²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			
처리실적							
자가처리			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간 처리량 (kg/연)	부산물 발생량 (kg/연)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연)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연)	위탁계약 비용 (원/kg)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전화
우 -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뒷면)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되, 우측에는 그 주소를 적습니다.
2. ⑤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이 조사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신설 2014.1.17>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⑥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명

[] 음식점: 객석·객실 합계 면적㎡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호텔·콘도: 객실 수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자가처리계획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건조 등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kg/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kg/일)

부산물 발생량(kg/일)

처리방법

처리자

⑧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⑨위탁재활용계획

위탁재활용량(kg/일)

위탁계약비용(원/kg)

위탁업소명

업종

재활용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달성군수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뒷면)

(뒤쪽)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 <신설 2014.1.17>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

①상 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⑤
공동
수집·
운반

대상업소명

배출량

kg/월

kg/년

대표자

소재지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 종

재활용방법

위탁량(kg/일)

소재지

⑥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배출량

kg/월

kg/년

대표자

소재지

공동재활용

재활용량(kg/일)

재 활용방법

재활용장소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kg/일)

처리예상량
(kg/일)

부산물 예상발생량
(kg/일)

부산물 처리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달성군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뒷면)

(뒤쪽)

공동 수집·운반, 처리 대상업소 현황(앞 쪽에서 계속)					
공동 수집 · 운 반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kg/월	kg/년		
공동 처 리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하는 자의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과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에 대한 <u>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u> (개정 2013.5.30)	3. ----- ----- <u>시행령 제8조의4</u> ----- ----- ----- ----- ----- ----- ----- ----- <u>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음식물 제조·가공·처리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루 100ℓ 이상)하는 사업장</u> -----.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u>감량의무 이행계획서</u> 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u>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u>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④ ----- ----- ----- <u>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u> ----- -----, <u>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u> -----.

현행	개정안
⑤ (생략) 1. ~ 3.(생략) <u><신 설></u>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u>감량의무이행계획서</u>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u>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할 수 있고,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u> ② ~ ⑥ (생략) <u>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 <u>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영업신고와 동시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u>	⑤ (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u>음식물 제조·가공·처리로 음식물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루 100ℓ 이상)하는 사업장 : 건조, 탈수 등을 통해 부피감소 등</u> ⑥-----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u>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u>----- ② ~ ⑥ (현행과 같음) <u>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 <u>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2.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 하여야 한다.	2. 달성군 내에 사업장을 둔 20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들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두어야 하며, 그 기구의 대표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되, 그 위탁계약서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 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u>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u> <u>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u> <u>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u> <u>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u>	6.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u> <u>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u> <u>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u> <u>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위탁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u> <u>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u>

붙임 3)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시행 2014.1.21] [법률 제12321호, 2014.1.21, 일부개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 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제38조(보고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1의2.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2호 ~ 5호. (생략)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82호, 2014.1.14., 일부개정]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본조신설 2014.1.1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4.30.] [환경부령 제553호, 2014.4.30., 타법개정]

제1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

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4.1.17.]

제60조(보고서의 제출)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0.1.15., 2011.9.27., 2013.5.31., 2014.1.17.)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1의2.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 :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4년 10월 10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공원녹지과)

3. 폐지이유

- 현행 도시공원 사용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항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내용과 중복되고, 현재 공원 내 입장료 및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제3조 (사용허가등), 제9조 (기납의 사용료 및 입장료 불반환),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의 조항이 서민생활 안정 및 불편해소를 위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공원 내 입장료 및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기로 함.

5.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폐지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3.11.23. 시행」 제24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따른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2011.5.2.」가 개정되어 공원 점·사용료 부과기준 및 공원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내용과 중복되며,
- 현재 관내 공원의 입장료 및 관람료도 징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 및 상부기관인 대구광역시 조례를 적용하고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폐지안의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원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4년 10월 10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공원녹지과)
3. 폐지이유

○ 기존의 『도시공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녹지점용 및 허가를 관리토록 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 하였으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규정할 것을 위임하지 않고 상위법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5.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폐지 조례안은 기존의 「도시공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녹지의 점용 및 허가를 관리토록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999.11.20.」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3.11.23.제정」으로 전부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규정할 것을 위임하지 않고 있으며,
-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9. 2.」에 따른 훈령(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서 녹지점용의 허가대상 및 기준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폐지안의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4년 10월 10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정책사업과)
3. 개정이유

○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권고 등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과 간결성을 높이고 군민독서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시청각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7조 제3호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조문제목도 변경된 내용에 맞게 변경(안 제7조).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2일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 제5차 「지방
규제 개선위원회」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개별법규에 산
재된 각종 규제를 일제히 정비하도록 권고하여 우리 군 T/F팀
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
- 안 제7조에 시청각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3호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제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법규의 간결성을 높이고, 자의적
이고 과도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한 이견 없습니다.

- ※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을 “(사용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의 1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시청각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지나친 상업적 목적 또는 정당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3.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u>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4년 10월 10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정책사업과)
3. 개정이유

○ 안전행정부의 권고 등에 따라 중복된 규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과 간결성을 높이고 군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군수가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한 본문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를 준용토록 개정(안 제13조)
- 나. 군립도서관의 위탁운영기간 중에도 군수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한 각 호를 삭제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5조를 준용토록 개정(안 제31조)
- 다. 군립도서관의 위탁종료시 수탁기관에게 재산, 시설물 등의 반환 및 기부채납의무를 규정한 본문을 삭제함(안 제32조)
- 라. 준용규정의 조례명을 정식명칭으로 수정하고, 준용규정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를 추가(안 제36조)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제15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 역시 정부의 지방 규제개선 방침에 따라 우리 군 T/F 팀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
- 안 제13조에 군수가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한 본문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 안 제31조에 군립도서관의 위탁운영기간 중에도 군수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한 각 호를 삭제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를 준용하였으며,
- 안 제32조에는 군립도서관의 위탁종료 시 수탁자의 재산, 시설물 등의 반환 및 기부채납 의무를 규정한 본문은 과잉규제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한편,
- 안 제36조는 삭제된 제32조 본문 대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를 새로이 준용규정에 추가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한 이견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기술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군수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6조 중 “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로 하고, “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 을”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

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부속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도서관 등의 내부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기술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30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수탁운영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도서관 설립취지에 위반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32조(반환 및 기부채납) ① 수탁기관은 제31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자료, 시설,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관법」,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제36조(준용규정)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

붙임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처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협약해지 등)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기관이 제8조의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휘·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4년 10월 10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관광과)

3. 개정이유

- 조례의 내용 중 규제의 범위가 모호하고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규제를 삭제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제8조(관람의 금지) 중 불필요한 임의규제인 제4호를 삭제

나. 제9조(행위의 제한) 중 제한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호와 제3호의 문구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임의규제인 제5호를 삭제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 역시 정부의 지방 규제개선 방침에 따라 우리 군 T/F팀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
- 임의규제인 제8조 제4호 “그 밖에 우호관 내 시설물 보호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분과
- 제9조 제5호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 부분 등에 대한 임의규제를 삭제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한 이견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호 중 “경관”을 “시설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허가되지 않은”을 “허가받지 않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3. (생략) 4. <u>그 밖에 우호관 내 시설물 보호·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제8조(관람의 금지)----- ----- -----. 1.~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호관 내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2. 흡연·음주·취사하는 행위 3. <u>허가되지 않은</u>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u>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u>	제9조(행위의 제한)----- --- -----. 1. -----<u>시설물 등</u>----- 2. ----- 3. <u>허가받지 않고</u> ----- 4. ----- ----- 5. <삭 제>

